

##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 중독조직 이론의 관점

강수돌\*\*

###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학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근본 원인이 심층적으로 규명되어야 진실 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비슷한 참사를 예방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여당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난 50년 이상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표출된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지금까지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원인이나 사후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SNS 등 일각에서는 “음모론” 또는 각종 루머들이 창궐하기도 했다.

---

\* 본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주최로 개최된 ‘4·16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3분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주제어: 세월호, 교통사고론, 음모론, 중독이론, 시스템 전환

Sewol ferry, traffic accident theory, addictive organization, system shift

본 연구는 이러한 “교통사고론”이나 “음모론”의 시각이 아니라 중독 조직 이론의 시각에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사후 대응 과정이 내포한 ‘구조적 모순’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상적이고 부분적인 논리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참사의 실제적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나아가 향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내지 배경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부나 기업의 조직 운영 과정에서 중독조직적 특성들이 만연해 있음을 낱알이 적시하고, 나아가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역시 중독조직적 특성들이 명확히 드러남을 부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여타 접근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일시적, 표피적, 임기응변적 처방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를 불문하고 그간의 사회경제 발전 과정이나 조직 내 중독 과정을 명확히 인지한 위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쇄신하는 ‘시스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한다.

## 1. 들어가며-세월호 참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4년 4월 16일은 미국의 2003년 9·11 (뉴욕 세계무역센터 붕괴) 또는 일본의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 붕괴)에 비견될만한, ‘충격과 공포’의 슬픈 기념일이 될 것이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sup>1)</sup>가 침몰하면서 무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물속에 ‘버려졌기’ 때문이다. 공식 탑승자 수는 476명, 그중 172명은 살아남았지만 304명은 목숨을 잃었다.

---

1) 세월호는 1994년에 일본에서 건조된 배로, 18년이 되던 2012년 10월에 세모그룹의 청해진 해운이 116억 원에 사서(산업은행에서 100억 대출) 30억을 들여 증개축을 한 6825톤급 여객선이다. 길이는 142미터, 폭은 22미터다. 사고가 난 2014년은 이 배의 원래 사용연한인 만 20년을 채우는 해였다(『비즈니스 포스트』, 2014. 4. 22).

그중 수학여행을 가던 고교생은 250명, 그 외 일반인은 54명이다.<sup>2)</sup> 여기서 ‘버려졌다’고 한 것은, 우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나아가 구명을 해야 했던 해경이나 해군, 그리고 총괄적 관리 책임을 져야 했던 정부나 대통령이 원래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갑갑해하고 딱딱해지는 것은, ‘설마?’했던 사고로부터 “전원 구출”이라는 오보를 거치면서 300여 생명이 고스란히 수장당하는 것을 마치 생중계 보듯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 사고 원인이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이나 비밀을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정부나 당국이 뭔가 설명이나 해명을 할수록 오히려 의혹이 늘어만 간다. 한마디로, 이 사건을 설명할 논리가 없다!

그런데 무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세월호 사태를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선박 안전 점검 미비나 기상 악화 등이 겹쳐 침몰하고 만, 안타까운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객실 안에서 선내 방송 및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만히 있던’ 304명의 승객이 하나도 구조되지 못한 것은, 선원이나 해경 등이 위기 속에서 당황하다 보니 벌어진 실수이거나 먼저 탈출한 선장 등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 탓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론’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거나 책임성 있는 당사자들이 코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현상 뒤에 가려진 사태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는 지적 계층을 드러낸다.

한편, 지금까지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원인이나 사후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SNS 등 일각에서는 ‘음모론’ 또

2) 검찰 수사 결과 발표(2014. 10. 6)에 따르면, 탑승자 476(학생 325, 일반 151)명 중 생존자는 172(학생 75, 일반 97)명, 사망자 294(학생 245, 일반 49)명, 실종자 10(학생 5, 일반 5)명 등이다.

는 각종 루머들이 창궐하기도 했다. 일례로, 세월호 선수 아랫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은 ‘잠수함’과의 충돌 흔적이며, 최초 구조자로 도착한 해경 123경비정이 승객이 몰린 선미 쪽으로 가지 않고 선수 쪽에서 선장 및 정체불명의 ‘오렌지맨’ 등 일부만 구조한 뒤 밧줄로 세월호를 끌고 가다 일부러 넘어뜨린, 의도적 학살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그 배경은 2012년 12월의 대선이 국정원, 군대, 보훈처 등 국가 기관 등에 의한 불법 개입 및 개표 조작 등에 의해 왜곡된 것이 탄로 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력의 위기를 감추고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초특급’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원래, 음모론이란 특정 사건을 설명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흑막 뒤의 모사꾼들이 계락을 펼친 결과라 보는 시도이다. 물론, 이 입장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엔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수사권’이 국가 기관에 의해 독점된 상태에서 ‘심증’을 넘는 ‘물증’을 제시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대체로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만다.

그런데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수사를 종결하면서 “무리한 증척과 과적, 운항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 결론짓고, 더 근본적 원인으로 “유병언 일가가 청해진 해운 자금을 착복하면서 재무 구조가 나빠지자 이를 메우고자” 무리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는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될 선박이었다.”고 결론지었다<sup>3)</sup>. 이것은 일종의 “경영 실패론”인데, 여당 일각의 “단순한 교통사고”도 아니고, SNS 일각의 “음모론”도 동시에 일축하는 발표다. 그러나 이 경영 실패론조차 ‘왜 그런 실패가 초래되었는가’에 대한 해명은 못한다. 이 경영 실패론의 최대 공헌은 최종 책임자를 유병언 일가로 ‘고박’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교통사고론’이나 ‘음모론’, 나아가 ‘경영 실패론’의 시각이 아니라 ‘중독조직 이론’의 시각에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사후

3) 『조선일보』, 2014. 10. 6.

대응 과정이 내포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세월호 침몰과 참사는 지난 50년 이상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표출된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며, 그러한 구조적 모순이 각종 대형의 계기마다 하나씩 해결되기는커녕 온존, 강화되어 온 것은 ‘중독조직’이 가진 고질병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결과라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모순이란 제도적 구조와 행위적 패턴을 포괄한다. 즉, 개인과 조직이 움직이는 패턴이 역기능적으로 구조화한 결과가 중독조직 또는 중독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전혀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참사가 발생했는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왜 어이없는지, 나아가 왜 그런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되는지를 일관되게 해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옳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기업이나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살핀 뒤, 조직중독 이론의 핵심 내용을 서술한다. 그러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응 등 양 측면 모두에 드러난 구조적 모순들을 조직중독 이론의 개념이나 관점을 빌려 설명한다.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실태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들을 제시한다.

## 2. 기업·정부의 사회적 책임

###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관해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논의가 있어왔다. Davis (1960)는 CSR에 대해 “기

업의 경제적, 기술적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초월하는 이유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나 조치”라 했고, Eells와 Walton (1961)은 CSR을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통솔하는 윤리적 원리”라 했다. 그러나 이들이 CSR로 제시한 내용은 주로 경제적, 법률적 의무라는 측면에 국한되었다. 그래야 이윤 추구라는 기업 행위의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한편, Carroll (1979, 1991)은 CSR을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범주화하고 또 이들 간에 일종의 위계적 관계(피라미드)가 있다고 본다. 그 순서대로 핵심만 간추려보자. 경제적 책임은 좋은 품질과 적정 가격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동시에 고용 창출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법률적 책임은 편법이나 탈법을 쓰지 않고 모든 법령이나 제도적 규제 등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윤리적 책임은 법 제도 등의 강제 규정에 나오지 않는 시민사회적 윤리나 규범, 기대, 특히 인간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실천할 책임이다.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모범적 기업 시민’으로 우뚝 서기 위해 해야 할 적극적 행위들, 예컨대 예술, 교육, 공동체 지원 등 공공복리나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다.

요컨대, CSR은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잘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나아가,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잘 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주주, 직원, 소비자, 연관 기업, 지역사회, NGO, 정부, 생태계 등)이나 전체 사회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행위다.<sup>4)</sup>

---

4) CSR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개념이 CSV (Creating Shared Values)로서, 기업 활동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M.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2011년 1월 HBR에서 제시한 개념이다(Porter & Kramer 2011). 일례로, TOMS는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제3세계 가난한 이들에게 똑같이 한 켤레씩 기부한다(『한국경제』, 2014. 5. 9).

## 2.2. 정부의 사회적 책임

국가 내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론 또는 공공정책론 분야에서 다루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계약설, 즉 인간 사회는 그냥 두면 이기심으로 인해 혼란이 생기므로 일정한 시민사회적 제약 속에 전체 사회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정부(국가)가 생겨났다는 관점이다(Locke 1690; Rousseau 1762; Stiglitz et al. 1989). 전체 사회의 이해란 일례로, 질서, 치안, 국방, 외교, 안전, 보건, 교육 등의 영역 등 공공의 이해가 걸린 내용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내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세력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공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다른 흐름은, 정부를 포함한 근대 국가의 탄생 자체가 지배세력이나 자본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형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Miliband 1969; Hirsch 1974; Tilly 1990). 즉, 봉건주의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신흥 상공인(부르주아 계급)은 토지, 사업체, 금전 등 재산의 사적 소유권 등 자기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 선거권을 도입해 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사법 체계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보면, 그것은 주로 사유재산 또는 재산이 많은 부자 계급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자본주의 나라들의 헌법 정신은 국가나 정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핀 두 흐름이 모두 조금씩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목숨만이 아니라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 인권(신체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환경권)을 신장하는 등, 삶의 질과 복지 시스템, 민주주의 전반을 증진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한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각종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소유권에 토대한 영리적 기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시스템 자체를 보호함을 의미한다.

### 3. 중독조직 이론의 관점

원래 중독조직 이론은 미국의 Schaefer와 Fassel (1988)에 의해 처음 체계화되었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영리·비영리 조직 모두,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병적인 행위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면 ‘비정상’이라 보고 고치려 하는 게 정상인데, 중독조직 내지 중독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병적인 것을 ‘정상’이라 보고 그를 비판하거나 고치려는 행위를 ‘비정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모든 중독(addiction)의 뿌리는(분열과 배제에서 오는) 현실의 고통이다. 이들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잊고자 알코올에 의존한다. 사람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통제한다. 갈수록 술의 도수가 높아진다. 그래야 일시적 만족을 느낀다. 술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또 손을 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독자로 불리는 것은 자존감에 치명타를 입는 일이라 두렵다. 거짓과 기만이 일상화한다.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기기만’도 한다. 다른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 몰래 마시기도 한다. 들리지 않기 위해 완벽을 추구한다. 혹시 왜 또 술을 마셨냐고 질책 받으면 상황이나 ‘남의 탓’만 한다.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설정하고 자신은 늘 피해자라 여긴다. 삶에 대한 주체적 책임감은 거의 없다. 스스로는 옳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기에 때로 주변에 공격적이다. 좋은 일은 자기 덕이고 나쁜 일은 남의 탓이다. 주변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그런데도 이런 중독 상태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한편으로 중독의 부정 덕(denial)이고 다른 편으로 ‘동반 중독자’(co-dependent) 덕이다. 가족이나 동료, 이웃, 친구 등 측근들은 그에게 직언을 하기보다 그 권위에 순응하고 외부의 비판에 대해 오히려 적극 방어, 보호한다. 그런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adult children of alcoholics)도 어른을 ‘미워하면서도 닮아가기’ 쉽다. 중독자나 동반자 모두 자신의 진정한 느낌을 속이고 억압한다. 이런 행위 패턴이 곧 중독 행위다.

### 3.1. 중독조직 이론의 핵심 내용

바로 이런 개별 중독 행위자의 특성과 구조가 한 개인을 넘어 조직 차원에서도 관철되는 것, 즉 중독 행위자는 물론 중독 가정이나 중독조직 등의 기저에 일종의 ‘중독과정’(addictive process)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중독조직론의 기본 관점이다.<sup>5)</sup> 어떤 조직이 중독자처럼 행위 하게 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Schaeff & Fassel 1988).

첫째, 해당 조직의 핵심 인물, 예컨대 CEO가 중독자인 경우다. 그 중독은 술, 마약, 카페인, 니코틴 등에 의한 물질중독일 수도 있고, 일, 권력, 관계, 쇼핑, 게임 등에 의한 과정중독일 수도 있다. CEO가 중독자로 행위 하면 그 조직의 공식 미션과 조직의 운영 과정 사이에 비밀관성이 커진다. 핵심 인물이 전체 조직을 병들게 한다.<sup>6)</sup>

5) 이러한 조직중독 이론은 조직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유기체론’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본 논문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나 기업 조직의 여러 측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런 면에서 ‘강한 국가’ 옹호 지향성의 사회유기체론과는 차별성을 띤다.

6) 이 중독 행위는 ‘모방’ 행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차원을 띤다. 그것은 조직 내 여러 개별적 중독 행위가 마치 기어의 이가 서로 맞물리듯 내적으로 결합되면서도 전체 조직과도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톱니들의 유기적 결합과는 판이하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갖고 있던 중독 행위를 조직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 직원이 직장 안에 와서도 중독 행위 패턴을 반복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나, 주변인을 겁박한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리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취업한 경우, 무의식 중에 동반 중독 행위를 반복한다.

셋째, 조직 자체가 중독물질로 작용하는 경우다. 일례로, 조직은 각종 비전과 약속, 그 미션이나 목표, 가족 같은 소속감, 보너스나 학비 지원 등 각종 혜택, 승진 체계, 일중독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삶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 없이는 삶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조직 자체가 중독물이 된다. 이런 조직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진정한 삶과는 단절된 채, 좀비(zombie)의 삶을 살기 쉽다.

넷째, 조직 자체가 그 전체로서 중독자로 행위 하는 경우다. 조직 내 소통 과정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솔직하기보다는 아첨형이다. 회의를 해도 중요한 것부터 짚은 뒤 차곡차곡 하기보다, 오랜 시간 결가지만 다루다가 정작 중요한 건 뒤로 미루거나 급히 끝낸다. 집단적 망각 증상도 크고 과거의 경험이나 실수로부터 학습도 못한다. 늘 임기응변적이다.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어도 내부를 살피고 고치기보다는 늘 외부 탓만 한다. 무책임이 제도화한다. 사고방식도 양자택일, 흑백논리, 편 가르기에 사로잡힌다. 조직 관리도 부정직, 과장, 거짓, 은폐가 일상화하고, 외부 비판 등에 폐쇄적이다. 일상이 혼란 투성이다. 종종 위기가 닥치면 ‘꼬리 자르기’나 ‘희생양 만들기’ 등을 통해 통제 권력을 강화한다. 조직 구조도 형식, 경쟁, 통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원래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별로 도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런 중독조직은 그 구성원들에게는 물론 협력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경영조직이나 구성원이 중독행위를 하게 되면 그 본연의 목적과 임무를 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중독물질(외적 성장, 돈, 일자리, 권력 등)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사회적 무책임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중독조직 이론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청해진 해운이나 정부 등 각종 조직의 병리적 행태가 참사의 근본 원인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2. 중독조직 이론과 세월호 사태의 연관성

이런 이론적 배경 아래 나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중독조직론 관점에서 조명한다. 그것은 우선, 세월호 사태의 원인과 관련, 우리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언론교육 등 모든 분야가 일종의 중독조직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여왔기에 이번 사태가 필연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본다. 조직 중독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책임성 있는 당국자나 청해진 해운과 같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일중독, 돈중독, 권력중독에 빠진 경우 결코 건강한 조직 경영을 할 수 없다. 나아가 그 구성원들이 최고 책임자의 눈치를 보며 순응하거나 아부하는 경우 그 조직은 서서히 병든 조직으로 변한다. 특히 조직 자체가 중독자처럼 행위 하는 경우, 자신의 참 모습을 숨긴 채 주변 조직들(예, 해구협이나 한국선급 등)과 동반 중독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병들어간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 병들어 가는 줄을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독조직 내지 중독사회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또,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중독적 과정이 관철되었다. 사고 자체를 직시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책임성 있는 당사자가 성실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인과 거짓, 조작과 통제, 독선과 흑백 논리, 진실 규명 회피와 희생자 나무라기 등 중독 행위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후적 대응 또한 중독조직 이론의 관

점에서 조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억압되고 은폐, 지연되었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음에도 정부나 청해진 해운 측이 이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근본 문제부터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려 하기보다는 부인과 조작, 지연과 회피, 독선과 희생자 나무라기 등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중독조직의 개별 구성원이나 조직 전체가 본연의 건강성을 상실한 채 병들어 있을 때 보이는 증상들이며, 나아가 이 조직의 중독적 행위방식이 결코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갈수록 진전되는 동태성을 띠고 있음을 역력히 드러낸다.

#### 4. 세월호 사태 속에 나타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 4.1. 세월호 사태의 원인: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과 중독조직적 특성

참담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런 재난을 제대로 기억, 성찰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온 사회 구성원들이 중독사회, 중독조직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 인정하고 이를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그것은 흔히 말하듯, ‘관피아’라는 말로 상징되는, 정치경제의 유착관계나 재난 대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정상화 또는 합리화하는 차원을 훨씬 넘는다. 온 사회의 건강성 회복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접근을 요구한다.

##### 4.1.1. 직접적 원인 미해명과 보상 문제 부각

가장 먼저 지적될 것은, 아직도 본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급변침”이 왜 일어난 것인지가 불명이란 사실이다.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해명은, 2014년 6월 10일 법정 증언이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씨가

변호사를 통해 한 말은,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을 피하고자 평소처럼 조타수에게 5도 이내 변침을 지시”한 것이다.<sup>7)</sup> 당국은 그 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단순히 “무리한 변침”이나 “운항 미숙”이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런데 수많은 조사나 재판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당연히도 인터넷, SNS 상에서 추측만 무성했다. 수사 당국이나 정부 당국, 심지어 대통령조차 진실 해명을 약속했음에도 진실 밝히기엔 별 관심이 없고 ‘유언비어 유포 엄단’이라는 경고만 했다.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뭔가 숨긴다. 숨기려니 조작과 통제가 필요하다. 당국도, 책임자도 중독 행위를 한다. 교신 내용이 잘려나가고 레이터 영상,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이 훼손된다.<sup>8)</sup> ‘진상 규명’을 위한 전 사회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도 ‘대학특례입학’이니 ‘보상 문제’니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한편, ‘이제 지긋지긋하니 세월호 얘기는 그만!’이란 담론까지 나왔다. 당국이 중독자라면, 무비판적 추종자들은 동반중독자다. 또, 진실 대신 보상과 같은 조직적 자원들이 중독물 역할을 한다.

#### 4.1.2. 화려한 목표, 초라한 실천

세월호와 유사한 일들이 부단히 일어났고 그때마다 안전 대책이나 재난구호 대책 등이 논의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오히려 화려한 외양 이면에 더 넓고 깊게 굶고 있었다. 조직이나 개인이나 중독자일수록 스스로 완벽한 척 하지만 사실상 속은 공허하다. 일례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두 달 전에 경주에서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로 대학생 등 10명이 죽어 온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놀랍게도, 마우나 리조트 사고 며칠 전에 안행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7) 『서울신문』, 2014. 6. 12.

8) 오히려 유가족들이 4개월 정도 노력한 끝에 사고 당일의 항적이 정확히 복원되었다. 급변침은 8시 49분 13초 직전 및 8시 50분 경에 두 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겨레』, 2014. 10. 15).

보고 때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하여 비상 시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자신 있게 보고했다.<sup>9)</sup> ‘5분 이내 재난 현장 도착률’을 58%(2013년)에서 74%(2017년)로 높여 생명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그 불과 며칠 뒤 10명이 죽었고 또, 그 두 달 뒤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이명박 정부 때의 ‘행안부’를 박근혜 정부가 ‘안행부’로 명패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 문제를 안행부 내 ‘비 실세부서’인 2차관실에 맡겼다. 노무현 정부 때 소방방재청으로 집중된 재난관리를 이명박근혜 정부가 소방방재청(자연재난)과 안행부(사회재난)로 ‘이원화’해 혼선만 불렀다. 대선 공약 생색내기 용이었다.<sup>10)</sup>

사실 지난 20년 동안 굵직굵직한 건만 해도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4년 성수대교 붕괴(32명 사망), 1995년 대구 지하철 폭발(101명 사망) 및 삼풍백화점 붕괴(502명 사망), 1999년 씨랜드 화재(23명 사망),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192명 사망), 2010년 천안함 사건(46명 사망), 2013년 해병대캠프 사고(5명 사망) 등이 번번히 일어났으며, 그 때마다 안전점검 시스템이나 교육, 재난 지휘체계 등 모두 ‘인재’라 하며 ‘페이퍼 대책’만 화려했을 뿐, 또,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란 말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예방 및 시스템 변화는 없었다.

9) 『시사인』, 2014. 4. 26, p. 26.

10) 이와 관련, 1987년 영국 여객선 엔터프라이즈호가 벨기에 근처에서 침몰해 188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후 유사한 인재가 반복되자 ‘산업재해를 포함한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활성화했다. 이를 근거해 2007년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됐다. 기업이 노동자나 공공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 기업한테도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업한테는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몇 백만 파운드의 벌금 폭탄을 맞는 기업들도 생겼다. 안전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확실히 던진 셈이다(『한겨레21』, 2014. 5. 9).

#### 4.1.3. 세월호, 처음부터 운항 불가였던 배

세월호 배 자체도 2012년 8월에 일본에서 산, 18년 된 낡은 ‘페리 나미 노우에’였다. 2년 뒤 폐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마치 참사를 예비한 듯, 2009년에 선박 운항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선령 제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사에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는 규제완화 논리였다.<sup>11)</sup> 돈 중독, 성장 중독으로 인한 위험 불감증이다. 안전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고의 편협성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선박안전법상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축소 대신 자료 제출도 가능하게 했다. “현장 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논리다. 또, 과적이나 과속에 대한 책임도 당사자 책임만 물기로 해, “경영 의욕”을 명분으로 사업주 책임을 면제했다.

게다가, 출항 전에 승객수나 화물 적재량, 차량 대수, 평형수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점검하고 통제해야 할 업무는 원래 ‘해운법’ 상 해경소관인데, 이를 직접 앓고 해운사의 권익 단체인 해운조합(운항관리실)에 위탁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적정 화물량이 지켜지지 않았고 승객수나 차량 수(기록보다 30대 초과) 체크도 정확하지 않았다.<sup>12)</sup> 모든 조직들의 중독행위가 상호 복제되었다.

또, 낡은 배 세월호는 50톤에 이르는 우측 사이드램프를 떼어내고, 선미 쪽 4, 5층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했다. 증축을 통해 승객 정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렸고, 이 구조 변경으로 인해 선체가 비대칭 구조로 되었고 떨림이 심했으며 복원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예인선을 불러야” 했다.<sup>13)</sup>

11) 『오마이뉴스』, 2014. 7. 31.

12) 탑승자 수도 거둬 수정되었고, 심지어 탑승자 명단에 없던 사망자도 나왔다(『시사인』, 2014. 5. 3).

13) 『시사인』, 2014. 5. 17. 세월호를 두고 원래 선장 신씨(47세)는 2014년 2월에 인천항만 관계자와 식사하며 “세월호가(5년이나 더 낡은) 오히로나호보다 안정성이 크

세월호 개조 당시(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진 해운의 대표나 여러 임직원들은 복원성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매각을 요구했지만 유병언 회장(73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sup>14)</sup> 수직 증축한 5층엔 유병언의 사진 전시실까지 만들었다. 증축으로 인한 균형이나 복원성 문제가 있음에도 일부 선원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면서 사진 전시실까지 만들었다.<sup>15)</sup> 유병언 회장의 중독 행위는 이미 ‘구원파’ 교주라는 신분에서도 드러나지만, 낡은 배에다 무리한 증축을 하고(예술성이 높지도 않은) 사진을 전시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행위, 배의 복원성 등 안전 문제 제기를 일거에 무시한 점 등은 전형적인 중독 행위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2013년 2월, 해수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 등록검사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해 사용연한을 2018년까지 승인받았고, 2013년 3월부터 인천~제주 구간에 투입되었다.<sup>16)</sup> 그 6개월 뒤(2013년 9월), 청해진 해운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 재매각을 검토했다. 분명히 내부문건(‘경영전략’ 및 ‘제주항로 선박운영 구조조정안’)에는 “선체 구조 비대칭” 또는 “강풍에 취약” 등 복원력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청해진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안전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매각에 나선 것”이라 했다.<sup>17)</sup> 조직적 차원에서 거

---

게 떨어진다. 배의 떨림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승객들의 불만이 많다. 일본에서 들여와 개조하면서 램프를 떼버려 그렇다.”고 한 바 있으며(『국민일보』, 2014. 4. 23.), 사고 직전인 4월 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라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세계일보』, 2014. 9. 2).

- 14) 유병언 회장은 이 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매각을 지시함으로써,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예사로 생각했고, 상습적 과적도 부채질했다(『아주경제』, 2014. 5. 27).
- 15) 선박의 균형유지에 중요 3요소는 선박구조, 평형수, 화물적재라 한다(『한국일보』, 2014. 4. 20).
- 16) 청해진 해운은 선박 검사 때 실제 개조와는 다른 도면을 제출했고, 한국선급은 이것이 엉터리임을 알고도 묵인했다(『JTBC TV』, 2014. 6. 10). 개보수를 통한 사용기간 연장은 『서울파이낸스』, 2014. 4. 21. 참조.

짓이 거짓을 낳았다.

또 흥미롭게도,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 등 관료 출신이고, 임원 중에 해양 관련 기관 출신이 많다.<sup>18)</sup> 역시 안전 관리에 치중해야 할 해운조합도 항운 관리라는 본연의 사명을 팽개친 채 320여 직원 중 240여 명이 ‘보험·공제업’에 치중했다.<sup>19)</sup> 중독자와 동반 중독자들이 연합을 이루고 조직 자체가 중독자로 행위 한다.

#### 4.1.4.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 세월호, 그리고 언딘

유병언 일가는 탈세, 배임, 횡령 등 불법은 물론, 자사에 유리하도록 해운법 개정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sup>20)</sup> 유병언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를 주도한 인물로, 1970년대 이후 종교와 사업을 결합시켜 승승장구, 1982년엔 세모그룹을 만들고 1986년엔 한강유람선 사업(세모해운)을 시작했다. 1997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그 허점을 악용, 위장회사를 내세워 재인수해 출범했다. 이것이 1999년 청해진 해운이다. 유병언은 당시 2000억 부도를 낸 후 ‘유령경영’으로 10년 만에 5600억 자산가로 군림했다.<sup>21)</sup> 유병언의 로비 덕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선박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였고, 엔진검사도 엔진 가동 7000

17) 『시사인』, 2014. 5. 17.

18) 『조선일보』, 2014. 4. 25.

19) 『문화일보』, 2014. 4. 25.

20) 로비를 위한 돈은 유병언이 ‘아해’라는 이름으로 찍어 전시한 사진들을(201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밖에서의 전시[16억 원 기부: 『여성신문』, 2014. 5. 18]나 베르사유 궁전 전시[68억 기부: 『아시아경제』, 2014. 6. 13] 때 런던 교향악단 특별 초청 등을 통해[프랑스 전시회에 총 200억 원 소요] 자기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청해진 해운(모회사: 천해지) 등 15개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들이 낸 사진 값이 총 446억 원에 이른다(『중앙일보』, 2014. 8. 13). 결국, 2011년 뉴욕에서 시작하여 2012년까지 2년간 총 10여 회의 사진전시회를 통해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TV조선』, 2014. 7. 21).

21) 『CNB저널』, 2014. 4. 28.

[표 1] 9대 해운사 비용 지출 비교(2013년)

지출(천원)	고려	남해	대아	동양	부관	씨월드	청해진	팬스타	한일
매출액(원)	66.9억	172억	456억	3.3억	199억	533억	320억	465억	492억
교육비	569	0	11,139	280	0	1,596	541	13,771	0
평균 급여	43,123	30,856	70,532	39,376	126,881	43,585	36,331	49,337	38,334
평균 복리비	5,715	3,139	15,242	6,360	17,395	5,145	1,410	12,455	5,249
기부금	18,438	10,000	43,780	12,500	0	153,890	300	53,592	10,000
접대비	33,034	44,907	201,688	17,777	208,932	115,943	60,574	401,265	82,070

\* 자료: 해운회사 감사보고서, 『이코노믹 리뷰』 (2014. 4. 23) 및 금감원 전자공시(DART) 참고, 필자 재구성.

\* 평균 급여 및 평균 복리비는 1인당 액수, 그 외는 회사 전체 액수임.

\* 고려=고려고속페리, 남해=남해고속, 대아=대아고속해운, 동양=동양고속, 부관=부관페리, 씨월드=씨월드고속페리, 청해진=청해진 해운, 팬스타=팬스타라인닷컴, 한일=한일고속.

시간마다 하던 것을 9000시간으로 완화했다. 청해진 해운은 해마다 평균 10억 이상의 비자금을 유병언에게 건네주었다.

위 [표 1]에서 보면, 청해진 해운의 경우, 9대 해운사 중 경제적 책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중위권 수준이고, 법률적, 윤리적 책임에 해당하는 교육비나 급여, 복리비 지출 액수는 지극히 낮은 편이며, 자선적 책임에 해당하는 기부금도 최하위 수준이다.<sup>22)</sup> 반면, 사회적 무책임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업계 중위권 수준이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 자체 내 지출 구조의 변동이다.<sup>23)</sup> 청해진 해운의 기부금은 2010년의 30만원에서 2011년엔 100만원으로 올랐다가 2012년엔 50만원, 2013년엔 30만원으로 추락했다. 매출액에 비해 쥐꼬리만 한

22) 물론, 후술하는 ‘연단’의 경우처럼 기부금 자체가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 ‘뇌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 표에서는 대체로 접대비가 사실상의 뇌물 역할을 하고 있다.

23) 『이코노믹 리뷰』, 2014. 4. 23. 참조.

수준의 기부금조차 줄인 셈이다. 또, 직원들의 안전 교육을 포함한 교육 연수비가 2010-2011년의 87만원에서 2012년 138만원으로 올랐으나 그마저 2013년엔 54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사회적 무책임 또는 부정부패의 고리라 할 수 있는 접대비는 2012년의 5070만원에서 2013년에 6057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2012년 접대비는 기부금에 비해 100배 수준이었으나 2013년엔 200배 수준으로 뛰었다. 요컨대, 2013년을 2012년에 대비해보면,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은 감소한 반면, 사회적 무책임은 증가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69세)은 정년퇴직 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대리 선장 역할(월급 270만 원)을 해왔다. 원래 선장 신씨(47세)는(2012년 9월부터 청해진 해운에서 근무했는데) 늘 제주 운항 때마다 배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사고 당시도 휴가 중이었다.<sup>24)</sup>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월급은 170-200만 원 수준으로 타 선사 급여의 6-7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이었다.<sup>25)</sup> 고용불안과 상대적 열등 처우는 직원들의 조직헌신이나 직무몰입을 저하하는 구조적 요인이었다.

한편, 청해진 해운과 독점 계약관계에 있었던 구난업체인 ‘언딘’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 기부금이 5570만원이다. 2012년도 기부금은 없었다. 2013년에 해경 산하 조직인 해양구조협회(해구협) 가입과 동시에 기부금을 냄으로써 구난 활동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sup>26)</sup> 돈 중독과 권력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뇌물을 ‘기부’

24) 『TV리포트』(2014. 4. 21)에 따르면 KBS 기자가 신씨의 부인과 면담했는데, 부인은 “균형을 맞추고 고려를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무리한 개조로 인해 진짜 불안해서 배를 못 타겠다는 말을 남편이 했었다.”고 전했다. 선장마저 무리한 개조로 인해 운항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던 셈이다. 게다가 선장이 이 문제를 말했으나 “결정권자가 아니라” 묵살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25) 『시사인』, 2014. 5. 3.

26) 『노컷뉴스』, 2014. 5. 12.

라 부른다. 이를 매개로 동반 증독 관계도 형성된다.

#### 4.1.5. 정부, 금융권, 해경,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집단 무책임

선박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보자. 건강한 정부, 건강한 사회라면 ‘탈규제’를 하더라도 안전, 건강, 환경, 인권 등과 관계된 규제는 풀면 안 된다. 그러나 증독조직은 “조직의 생존(대개 수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기에 이윤의 관점에서 모든 규제는 푼다.<sup>27)</sup>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 생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로 생각한다.” 2014년 2월 5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sup>28)</sup> 이윤을 핵으로 하는 시스템을 위해 진정 건강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성찰할 여유가 없다. 바로 그 틈에 부정부패와 안전 불감증, 제도적 무책임이란 독버섯이 자란다.

일례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에 169억 원을 융자했는데, 특히 2012년 10월에 청해진 해운의 부채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구입 시가 116억 원)를 담보로 100억 원을 건넸다.<sup>29)</sup> 기업의 건전성이나 리스크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결코 거액 대출은 불가능했다. 회사는 그중 30억으로 세월호 증축을 했고 용량을 239톤, 탑승객을 116명 늘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모그룹 8개 회사의 은행권 여신 잔액은 2013년 말에 1370억 원, 금융권 전반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특히 청해진 해운, 천해지 등 2개 회사는 여신 중 30%를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다.<sup>30)</sup> 이것은 고위 관료의 매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관치금융,

27)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경제발전’을 늘 강조했고, 이 맥락에서 2010년, 선박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28) 심지어 세월호 침몰 직후 국무회의에선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까지 통과시킨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

29) 『서울파이낸스』, 2014. 4. 21.

30) 그 외 채무는 국민은행 8억 7000만원, 신한은행 8억 원, 하나은행 10억 원, 외환은행 10억 원 등이다.

정경유착의 증거이다. 돈과 자리를 매개로 기업과 은행, 관료들이 동반 중독 관계를 형성한 셈이다.

또 다른 예는, 해경과 해운조합, 언딘의 유착이다. 사고 직후 ‘골든타임’ 시간에 “언딘의 독점 작업을 위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자원봉사)와 해군의 활약을 막아서면서까지 언딘의 도착을 기다린 것은 그 필연적 결과다.<sup>31)</sup>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도 기대했던 언딘은 막상 도착한 이후 아무 성과가 없었다. 사실, 언딘은 원래 구조가 아니라 인양 전문 회사다. 그럼에도 해경은 언딘의 독점 이윤을 위해 ‘기다리라’고만 했다. 중독조직의 자기기만이 온 사회를 기만하는 경우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비밀은 2011년에 개정된 ‘수난구호법’ 속에 있다.<sup>32)</sup> 여·야 국회의원이 동반 중독자로 참여한 이 법에 따라 정부 예산을 받는 해양구조협회가 창립되었고(2013년 1월), 총재는 세운철강 회장이 맡았으며 부총재는 당시 회원사인 언딘 사장이 맡았다. 해경 출신 퇴직자 6명도 해구협에 낙하산으로 갔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해구협 고문이다. 이강덕 전 해경청장은 명예총재다. 국회, 해경, 언딘은 한 덩어리다. 마침내 8월 6일, 검찰은 이인수 전 해운조합<sup>33)</sup> 이사장 등 43명을 기소했다. 공금 횡령 또는 안전 점검 관련 죄목이다. 또, 검찰은 선박 안전 승인과 관련, 뇌물을 받은 한국선급 간부 등 관련자 35명을 기소했다. 한국선급은 평소에도 법인카드로 해수부 공무원을 접대(술과 골프 등)했으며, 사고 이후 비리 관련 증거 인멸을 하던 모습이 CCTV에 잡힌 바 있다.<sup>34)</sup> 부패와 조작은 중독조직이 평소에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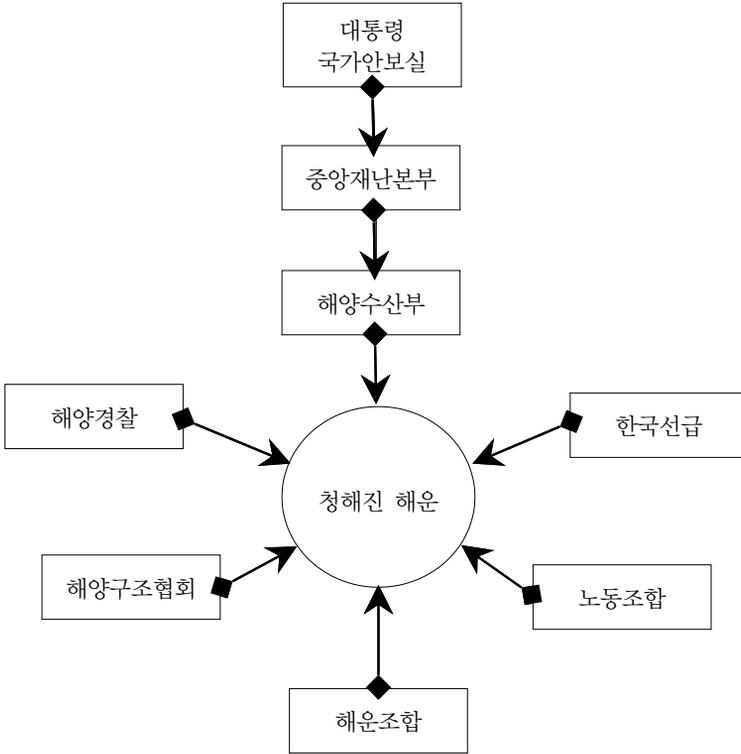
31) 『시사인』, 2014. 5. 10.

32) 『시사인』, 2014. 5. 17.

33) 해수부는 원래 운항 허가를, 해경은 안전 관리 및 구조를, 한국 선급은(정부 위탁으로) 선박 구조 안전 검사를, 해운조합은(해경 위탁으로) 운항 안전 감독 및 과적, 과승 점검을 담당한다. 또, 해수부(15개), 해경(진도, 여수 2개) 관할의 VTS(교통관계센터)는 해양안전과 관련 운항 선박과 교신하면서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34) 『경향신문』, 2014. 5. 23.

하는 방식이라, 스스로 비정상인 줄을 모른다.



[그림 1] 청해진 해운을 둘러싼 중독조직 간 관계

\* 자료: 『시사인』(2014. 5. 24)을 참고해 필자 재구성.

한편, 언던(UMI)은 원래 2004년에 출발한 해양 플랜트 및 해양구난 등 해양산업 관련 회사이다. 현재 비상장 회사이나 2014-5년 중 상장 예정이었다. 그 지분 구조의 36%는 기재부, 국토해양부, 특허청 등에 의한 투자조합 소속이다.<sup>35)</sup> 고위 공무원과 인적 연결이 탄탄하다. 이미 정부 보

35) 김어준의 파파이스[KFC] 10회차, ‘세월호, 언던의 욕망’ 편, 2014. 6. 20.

조금도 3억 이상 받았고, 공적 지급보증도 약 40억 정도 받았다. 특히, 2011년엔 진도~제주 간 해저 케이블 고정용 돌 깔기 공사가 있었는데 50억 중 약 12억을 이윤으로 남겼다. 원래 이는 한전 발주 사업으로, LS 전선을 거쳐 ‘덕만해운’이 언딘에게 재하청을 준 사업이다. 그런데 위 언론에 따르면 덕만해운은 유령회사로, 비자금이 흘러들어가기도 했다. 세월호 사태만 아니었다면, 언딘은 곧 증권거래소에 상장까지 되어 연근해에 이미 가라앉은 약 1,800척의 배 인양 사업을 독점할 수 있었다. 요컨대, 국회의원과 ‘해피아’들은 해양안전이나 생태보존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동반 중독’ 관계를 형성 중이었다.

#### 4.1.6. 정직한 목소리의 억압, 반민주적 조직 운영

이와 더불어 또 지적해야 할 측면은 노동조합이다. 건강한 노조라면 노동자의 권익만이 아니라 승객 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세월호의 경우, 상습적인 화물 과적 행위에 대해 1인시위로 항의한 항구 노동자가 있었다.<sup>36)</sup> 그러나 회사는 물론 항운노조가 이를 묵살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조직이나 사회 차원에서 정의나 책임에 근거한 행위가 금기시된다. 경우에 따라 이들은 지시 불응이나 업무 방해자로 낙인찍혀 배제, 격리되기도 한다. ‘직장은 밥을 먹여주지만, 윤리는 밥을 먹여주지 못한다.’는 자기 파괴적 의식이 고착된다. 이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장되어 “사회적 힘의 절대적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 된다.<sup>37)</sup>

36) 정승일, “보이지 않는 손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다,” 『프레시안』, 2014. 5. 23.

37) 최장집, “세월호 사건을 통해본 책임의 사회적 조건,” 『열린연단』, 2014. 6. 25. 및 『주간경향』 2014. 9. 16. 최장집 교수 인터뷰 기사 참고.

#### 4.2. 세월호 사태의 사후 대응 과정에 나타난 증독조직의 특성들

세월호 사고 직후, 정상적이라면,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을 대피시키고, 해경은 구명 및 구난활동을 하고,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했다. 행안부나 해수부는 중간 역할로 구난에 필요한 모든 지원(예, 구명보트, 헬기, 구조요원 배치 등)을 전면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증독시스템은 혼란과 이상 징후만 드러냈고, 304명의 목숨을 산 채로 버렸다.

##### 4.2.1. 거짓과 조작, 자기기만

세월호(6825톤)가 침몰하던 그 순간 세월호 선원들이나 소속사 청해진 해운 직원들은 바빠 움직였다. 선장과 선원들은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위기 시 선내에 끝까지 남아 승객 구조 등을 총지휘해야 함에도 먼저 탈출하기 바빴고, 청해진 직원들은 서류 조작에 바빴다. 승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만히 있어라.”고만 했지, 승객을 구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는 방기했다. 청해진 직원이 세월호 화물 장부를 조작한 것은, “과적에 따른 복원성 훼손 문제를 사고 원인”이라 판단했고 서둘러 “과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또 과적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컸다.<sup>38)</sup> 실제로, 세월호는 2013년 3월 이래 인천~제주 구간을 241차례 운항했는데, 그중 239차례나 과적 운항했다.<sup>39)</sup> 과적이 없던 경우는 주로 제주에서 인천으로 돌아갈 때 짐이 적어서였다. 사고 당시 적재량은 총 3600여 톤이었고 적정량(1070톤)의 3배 이상이었다. 사고 직후 청해진 직원은 상부 지시만 받고 서류 조작을 했으나 아무도 적정량을 몰랐기에 임의로 180톤만 줄였다.

---

38) 『시사인』, 2014. 5. 17. 금감원에 따르면 세월호는 113억 원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가 78억 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 원을 각각 인수했다(『한국보험신문』, 2014. 4. 27).

39) 『MBC TV』, 2014. 4. 26.

특히, 선장이 먼저 탈출한 모습은, 2009년 11월,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강한 파도로 인해 아리아케호(7910톤)가 침몰 위기에 빠지자 선장과 사무장, 승무원 등이 해상보안청과 협력, 체계적인 대응으로 승객(7명)을 모두 헬기로 구한 뒤, 21명의 선원들이 7명씩 단계별로 탈출한 경우와 대조된다.<sup>40)</sup> 게다가 아직까지 선장은 제대로 말문을 열지 않았다. 진실 앞의 두려움 탓이다.

#### 4.2.2. 해경의 이상한 대처 방식,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마비

한편, 청해진 해운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일(4월 16일) 오후 2시쯤 청해진 해운에 팩스를 보내 해상 크레인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sup>41)</sup> 해당 공문은 “귀사의 조치가 지연될 경우 우리 청에서 임의로 필요한 장비를 동원하여 조치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사에서 부담됨을 양지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해경 측은 청해진 해운에 ‘언딘’이 이미 구난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언딘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했다. 흥미롭게도 그 다음날 언딘은 “세월호에 대한 구난·구호 용역 및 기타 기술지원 일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것에 합의하여, 다음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힌 계약서를 들고 청해진 해운을 찾았다. 계약금, 보상액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sup>42)</sup> ‘부르는 게 값’이었다. 그렇게 계약된 해상 크레인은 사고 12시간이 지나 출발했고 55시간 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했으나 이미 배는 완전 침몰한 뒤였다.

40) 『시사인』, 2014. 5. 24.

41) 사고 당시만 해도 청해진 해운 측은 언딘을 몰랐다. “담당 해경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언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벌써 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그쪽과 계약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청해진 서류에는 ‘언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시사인』, 2014. 5. 10).

42) 『세계일보』, 2014. 5. 1. 해경과 언딘은 2010년 천안함 사태 때도 실종 장병 수색을 하던 금양호 침몰 후 계약금 5억 원에 실종자 수색작업을 한 바 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음에도 언딘은 정부로부터 4.5억 원을 받았다(『경향신문』, 2014. 4. 27).

사고 직후,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해경이 청해진 해운에다 언딘과 독점 계약을 하라고 중개하고 언딘의 출동을 기다리는 사이 ‘골든 타임’은 다 놓쳤다. “해경이 직접 해상 크레인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sup>43)</sup>

다음으로, 선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목포해경(123정)은 침몰 직전의 배를 제대로 잡으려 노력하거나 승객 구조 노력을 하기는커녕 언터리 안내 방송을 한 선원 10명만 구한 채 선박 내부 진입을 하지 않고(바다에 뛰어든 승객만 끌어올리는 등) “어선 수준의” 구조만 했다. 오히려 해경은 언론에 “인원 투입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으로 구출 중”이란 거짓말까지 했다. 언론도 “전원 구출” 오보를 냈다.

전술한 바, 해경은 자신이 청해진 해운에 소개해 독점 계약을 맺은 언딘이 사고 지점에 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에 나선 민간 잠수사나 해군 UDT 요원들의 투입조차 막았다. 위험에 처한 생명을 두고 이윤과 이권을 우선하는 중독 행위였다.

계다가 최초로 탈출한 선장을 해경 수사관이 기자들로부터 격리한 채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채워준 일도 비정상이다.<sup>44)</sup> 이것은 “해경은 인명 구조에 전념하고 사고 전반 수사는 검찰이 담당했던”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sup>45)</sup> 때와 대비된다.<sup>46)</sup> 계다가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인 해경(해운조

43) 『시사인』, 2014. 5. 10. 이러한 모습은 2012년 1월, 이탈리아 토스카나 제도의 질리오 섬 부근에서 암초에 충돌한 뒤 정전 및 침몰 위기에 빠졌던 코스타 콩코르디아호(11만 4147톤)의 경우와 대비된다(『시사인』, 2014. 5. 24). 이 경우도 선장과 부선장은 대부분의 승객들을 뒤로 하고 먼저 도망을 갔지만, 한국의 해경에 해당하는 리보르노 해안경비대는 탈출한 선장더러 즉각 귀환을 명령함과 동시에 예인·구조선박 14척, 경비정 25척, 헬리콥터 8기 등으로 1차 구조작전에서 4229명 중 4194명을 구조했다.

44) 초기 대응 실패로 수사 대상인 해경이 오히려 수사팀에 합류, 불신을 불렀다. 목포 해경에 꾸러진 초기 합수부 수사팀 중 검찰 측 인원은 18명, 해경 수사관은 50여명이었다(『시사인』, 2014. 5. 3).

45) 1993년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는 그나마 해경이 초기부터 민간 어선과 유기적으로

함에게 위탁)이 직무유기를 해놓고선 초기 합수부 68명 중 50명을 차지했다. 자기기만이다. 그 수사관은 유병언(73세)의 구원과 신도였다.<sup>47)</sup> 당국과 언론은 참사의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하고 관심의 초점을 유병언 일가로 옮겼다. 초점이나 본질의 이동은 중독 행위의 또 다른 특성이다.

#### 4.2.3. 책임성 있는 당사자 및 언론의 부재, 화려한 약속의 남발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의 실질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한국기자협회가 2014년 7월 말 기자 303명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라고 물은 바, 54.6%가 박근혜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했고, 13.7%가 유병언 전 회장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sup>48)</sup> 물론, 개인이 물어야 할 책임도 있지만, 경영조직 차원 또는 국가경영 차원에서 물어야 할 책임도 있다. 책임회피를 위해 도망을 갔던 유병언은 물론,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진지한 사과도 않고 사태의 책임을 선장이나 승무원들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대통령, 정부도 사고 직후엔 마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모든 걸 책임질 듯이 말해놓고선, 실제로는 용두사미로 드러났다.

---

협력해 인명구조와 시신인양을 해서 승객 362명 중 70명을 구했다(292명 사망). 흥미롭게도 그 후 나온 사건 백서에서도 악천후에도 무리한 출항, 무리한 변침, 정원 초과, 화물 갑판 과적, 구명보트 불량 등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다(『시사인』, 2014. 5. 17).

46) 『시사인』, 2014. 5. 3.

47) 유병언이 ‘리모콘 경영’을 하던 15개 계열사의 임직원은 대부분 구원과 신자다. 직원 채용엔 직무 능력보다 이력서와 간증서를 본다(『시사인』, 2014. 5. 3). 건강한 기업이라면 직원 채용 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 회사들은 대체로 종교적 충성심만 체크했다. 그 신자들 중 일부 핵심 인물(김업마, 신업마, 양회정 기사 등)이 6월 12일 유병언 변사체 발견까지 유병언의 도피를 돕고 보호했다. 유병언이 돈과 권력의 중독자라면 이들은 동반 중독자였다.

48) 『기자협회보』, 2014. 8. 13.

나아가 1심 재판부는 11월 11일 선고에서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적용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sup>49)</sup> 이준석 선장 및 1·2등 항해사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박기호 기관장의 살인 혐의는 일부 유죄이되, (승객이 아니라) 다친 동료 2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유기치사, 유기치상)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선장이 “정황상” 퇴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인정했고,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sup>50)</sup>를 받은 승무원 15명 전원에게 무죄라 했다. 또, 선원법 9조 상 선장의 직접 운항 지휘 의무에 대해선 사고 구간이 협수로가 아니었기에 “직접 지휘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결국, 원래 검찰이 선장에 대해 사형, 살인 혐의가 적용된 다른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 징역 15~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결과는 선장 징역 36년, 기관장 징역 30년, 1등 항해사 징역 15년, 나머지 12명 징역 5~10년으로 정리되었다. 요컨대, 이 판결은 선원 15명에 상대적 중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04명의 생명 방기 책임은 묻지 않았으며, 나아가 사고 원인과 정경유착 등 그간의 의혹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제도화된 무책임만 또 드러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진실 보도나 원인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겉모습에 치중하는 취재 경쟁만 했다.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병든 행위다. 기자들은 ‘피재자’의 관점이 아니라 ‘통치자’의 관점에서 보도함으로써 유

49) 『연합뉴스』, 2014. 11. 11. 이와 관련, 2015년 2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50) 수난구호법 18조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입법취지 등으로 미뤄 세월호처럼 조난 선박 자체에 탄 승무원들이 아닌 충돌 등의 경우에서 상대방 선박 승무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나아가 수난구호법 해당 조항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선장,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 등 3명에 적용)에 대해서도 자연히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 2014. 11. 11).

죽들을 여러 번 죽였다.<sup>51)</sup> 대통령은 ‘받아 읽고’ 기자들은 정부 발표를 ‘받아쓰기’만 하는 ‘기레기’(기자 + 쓰레기)가 되었다. 진실과 공정 보도라는 본연의 사명은 잊은, 돈과 권력에 중독된 행위들이다.

#### 4.2.4. 선박 개조 때부터 사고 보고의 체계까지: 국정원의 존재

흥미롭게도 7월 25일에 복구된 ‘세월호 노트북’에선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이 나왔다. 세월호 증개축 마무리 시기인 2013년 2월 말의 문건으로, 냉장고, TV, 침구류 상태, 천장 칸막이, 도색, 선팅 등 세세한 사항 100가지 정도가 지시 사항으로 나와 있다.<sup>52)</sup> 이것은 5월 중순에 알려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 즉 세월호 사고 발생 시 전례 없이 국정원 제주 및 인천 지부에 우선 보고하도록 한 것과 더불어,<sup>53)</sup>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을 넘어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했다.<sup>54)</sup> 게다가 처음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했다던 국정원이 사실은 맨 처음으로 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과 은폐 행위의 연속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결코 이해되지 않는 해명만 했다.

오히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SNS 상의 의견들이나 특히 카톡 상의 대화 내용들에 대해 검·경 등 정보기관들이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 하나면 되는데, 진실을 숨기자니 온갖 중독 행위가 창궐한다.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을 하자, 이를 뒤 바로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SK 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4대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사실

51) 『시사인』, 2014. 5. 3.

52) 『뉴스엔뉴스』, 2014. 7. 28.

53) 『경향신문』, 2014. 5. 15.

54) 『시사포커스』, 2014. 8. 11.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이란 문건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조직중독 내지 동반중독의 도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순간이다. 앞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중점 수사 대상으로 1)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2)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3)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sup>55)</sup> 등을 제시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하겠으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겠다고 했다.

#### 4.2.5. 애도의 공간을 마케팅 기회로: 제정신이 아닌 기업과 정부

한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슬픔과 분노의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애도의 공간을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K스포츠의 한 매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희생자 애도 문자를 올리면서 슬쩍 자사의 할인 이벤트를 홍보했다.<sup>56)</sup>

최악의 모습은 정부와 청와대였다. 일부 장관들은 진도 팽목항을 찾아 형식적 위로 끝에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실종자 가족들 옆에서 ‘컵라면’을 먹기도 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월 23일에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sup>57)</sup> 중독자가 보이는 무책임성의 극치였다.<sup>58)</sup> 또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에 진도 실내체육

55) 이와 관련, 흥미롭게도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J모씨와의 밀회설 등을 담은 칼럼을 최초 게재(2014. 7. 18)했는데, 이를 보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 기자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자, 청와대에서(조선일보는 놔두고) 일본 기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재판 중이다.

56) 『시사위크』, 2014. 4. 19.

57) 그러나 실제로 해경이나 해수부의 매뉴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 돼 있다(『노컷뉴스』, 2014. 4. 24. 및 『주간경향』, 2014. 7. 15).

58) 김현미 의원이 뒤늦게 알아낸 바, 세월호 침몰 시각에 청와대에선 8시 30분부터

관을 방문,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질 사람은 모두 엄벌하겠다.”고 했고, 실종자 가족들은 박수까지 쳤다.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가 “구름 위의 심판자”로 존재 이전을 한 셈이다.<sup>59)</sup>

계다가 대통령은 5월 19일엔 눈물의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마침내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설치” 및 “관피아 등 적폐 청산”을 공언했다. 그러나 사후 대책을 논하는 대신, 그날 오후 UAE 출장을 떠났다. UAE의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참여가 목적이었다. 언론엔 “국익”, “고급 인력 중동 진출 가능성”, “경제 활성화 기여” 따위의 문구가 요란했다. 1기당 50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운용회사 설립 협상도 있다고 했다.<sup>60)</sup> 요컨대, 중독 시스템의 수장에겐, 돈벌이가 곧 국익이며 생명은 잉여에 불과하다.<sup>61)</sup>

---

한 시간 동안 외교, 국방, 통일부 차관과 국정원 1차장 등이 모여 ‘국가안보회의 NSC’를 열고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세월호 사고는 몰랐다고 한다(『프레시안』, 2014. 7. 10).

59) 『시사인』 2014. 4. 26.

60) 원래 UAE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한전이 주도하여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과 1400MW급 원전 4기를 2020년까지 건설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아랑곳 않고 UAE로 원전 수출 출장을 떠났다. 박 대통령의 2014년 5월 19일 UAE 출장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61) 여기서 청해진 해운의 계열사 ‘아해’가 UAE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 세월호 밀바닥에서 나온 ‘계란 냄새’가 수상하다는 음모론은 일단 보류한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청해진 핵심 계열인 아해(주)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1·2호기(2013년 9월)에 20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라며(전후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근거로 2012년 2월 UAE 원전 수출에도 참여해 추정치 85억 원을 수수했다.”고 했다(『국민일보』, 2014. 7. 3).

## 5. 맺는 말: 사회적 책임성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환’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터라도 부분적, 일시적, 표피적, 임기응변적 땀질처방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를 불문) 조직 내 중독 과정을 명확히 인지한 위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치유해내는, ‘시스템 전환’을 해야 한다.

마치 중독자가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이 없이 행동하듯, 중독 조직이나 중독사회도 조직이나 사회의 사명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이 없이 행동한다. 그 결과가 사회적 무책임으로 나타나며 ‘무책임의 제도화’ 또는 ‘책임의 외부화’로 표현된다. 기업의 경우 그것은 ‘이윤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그리고 ‘일시적 선행, 일상적 무책임’으로 드러나며, 정부의 경우 그것은 ‘업적의 자기화, 책임의 타자화’ 그리고 ‘거창한 약속, 빈약한 실행’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중독적 행위 방식은 원래의 고질병을 유지, 강화할 뿐, 결코 치유하지 못한다. 세월호 이후 이런 진지한 성찰과 변화가 결여된 상태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참사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좋은 스마트폰, 뛰어난 조선소가 있으면 뭐하나.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도 없는데.”라는 『르몽드』의 논평<sup>62)</sup>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도 결국 행복한 삶을 원해서다. 건강과 안전은 행복한 삶의 기본 전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50년 이상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양적인 성장, 외형적 모습, 1등 만능주의 등에 중독되어 왔다.<sup>63)</sup> 안전 불감증, 집단적 무책임성이 그 부

62) 『르몽드』, 2014. 4. 19.

63) 우리는 대개 5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음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면서도 물질발전과 정신발전의 괴리가 생겼기에 이제부터라도 정신발전만 잘 이루면 최고 선진국이 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정신발전을 저해하면서 전개된 물질발전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참된 성찰은 물질발전과 정신발전을 모두 근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산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13)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지적한 바, 부(wealth)란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삶이 목적이라면 돈은 수단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 온 ‘아시아의 용’이란 칭호나 ‘한강의 기적’ 같은 환호는 이 중독 시스템 속에서 일종의 마약 역할을 해왔다. 세월호 참사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와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준다.

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치유의 길을 걷듯, 중독조직이나 중독사회도 스스로 중독임을 자인해야 치유가 시작된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사회이건, 중독과정에 대한 정직한 대면, 그리고 진실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즉 모든 걸 걸고 진정 ‘회복’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이 치유의 시작을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치유는 결코 홀로 되지 않는다. 중독 사회에서는 사실상 ‘모든’ 구성원이 동반 중독자이기에 모두 진심으로 치유 과정에 참여해야 비로소 회복이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오로지 보상 문제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됨을 뜻한다. 나아가 이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 내포된 “경영 실패론”이 암시하듯, 부정과 비리의 직접적 책임자들을 처벌하고<sup>64)</sup>, 내·외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한다든지, CSR/윤리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윤리 경영 선포식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말한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1월 7일 도출된 ‘특별법 합의’<sup>65)</sup>는 진상조사, 보상문제,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지

---

센(2013)이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란 자유의 확장을 이루는 과정”이라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중시한 것은 시사적이다. 나는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동반중독자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독 과정’을 근원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본다.

64) 처벌되는 자들은 일부 상징적 인물이거나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세월호 사건으로 총 399명이 입건, 그중 154명이 구속 수사 및 재판 대상이 되었다(『조선일보』, 2014. 10. 7).

65) 『한겨레』, 2014. 11. 7; 『오마이뉴스』, 2014. 11. 13.

만, “진실을 밝히기엔 턱없이 부족”하다.<sup>66)</sup> 2015년 2월,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설립준비단이 마련한 조사 관련 예산도 여당 수정안에서 절반으로 삭감됐다. 특히, 참사 기초현황 조사 예산은 약 12억이 0원으로, 진상규명 실지조사 예산은 약 16억이 2억으로 줄었다.<sup>67)</sup> 진실 규명엔 별 관심이 없다.

결국, 중독조직과 건강 조직의 핵심적 차이는, 모든 구성원과 조직, 행정 과정, 정치경제 과정에 깃든 병적 요소의 솔직한 인정과 척결 노력 여부에 있다. 그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나 조직 속에 깃든 ‘중독’이란 질병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 찾기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중독된 돈, 권력, 자리, 위신 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돈이나 권력, 경제성장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논리가 문제다. 게다가 조직중독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나 정부 조직이 돈과 권력에의 중독을 탈피, 본연의 사명감에 충실하도록, 그리하여 사회공공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과 구조, 기능 등 활동의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쇠신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 건강성 회복이 가능하다.

범위를 세월호로 좁히더라도, 폐선 직전의 배가 무리한 증축 뒤에도 합법 승인을 받은 구조, 일상적 과적과 안전 점검 부실을 눈감아준 구조, 청해진, 언덕은 물론, 해경, 해운조합, 해구협, 해수부, 국회, 정부, 국정원, 청와대 간의 인적, 물적 유착과 부패, 그리고 조직 내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한 동료·상급자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세월호를 둘러싼 중독 시스템들이다. 그 기저엔 돈이나 권력에의 중독이 숨어 있다. 수습 과정에서 ‘꼬리 자르기’ 및 ‘생색내기’ 식의 중독적 해법을 중단해야 할 이유다.

마치 마약이나 담배를 끊듯 진정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결단이 서야 한다. ‘삶’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일단 ‘치유’를 선택했다면, “최종 책

66) 『오마이뉴스』, 2014. 11. 14.

67) 『뉴스타파』, 2015. 2. 11.

임자”부터 치유의 시작을 선포하고 가치혁신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조직 혁신과 사회혁신을 주관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와 역량 부족을 고백하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 건강한 태도다.<sup>68)</sup> 그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전 사회적으로 시작된다. 기업, 정부 등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의식 위에 거듭나야 한다. 병든 조직으로부터 건강 조직으로의 ‘시스템 전환’(system shift), 그리고 가치혁신에 기초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까닭이다. 과연, 우리에게 세월호와 달리 아직 ‘사회적 복원력’이 남아 있는가?

---

68) ‘일명의 알코올중독자 모임(AA)’에서 핵심으로 삼는 ‘12단계 프로그램’ 중 ‘1단계’가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We admitted we were powerless over alcohol-that our lives had become unmanageable.)이다. 이것은 알코올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다. 같은 원리는 모든 중독에 다 적용된다(AA 2014 참조).

## 참고문헌

### 【자 료】

- 『경향신문』, 2014. 4. 27; 5. 15; 5. 23.  
『국민일보』, 2014. 4. 23; 7. 3.  
『기자협회보』, 2014. 8. 13.  
김어준(2014), 파파이스[KFC] 10회차, 『세월호, 언던의 욕망』, 2014. 6. 20.  
『노컷뉴스』, 2014. 4. 24; 5. 12.  
『뉴스타파』, 2015. 2. 11.  
『르몽드』, 2014. 4. 19.  
『문화일보』, 2014. 4. 25.  
『뷰스앤뉴스』, 2014. 7. 28.  
『비즈니스 포스트』, 2014. 4. 22.  
『서울신문』, 2014. 6. 12.  
『서울파이낸스』, 2014. 4. 21.  
『세계일보』, 2014. 5. 1; 9. 2.  
『시사인』, 2014. 4. 26; 5. 3; 5. 10; 5. 17; 5. 24.  
『시사위크』, 2014. 4. 19.  
『시사포커스』, 2014. 8. 11.  
『아시아경제』, 2014. 6. 13.  
『아주경제』, 2014. 5. 27.  
『여성신문』, 2014. 5. 18.  
『연합뉴스』, 2014. 11. 11.  
『오마이뉴스』, 2014. 7. 31; 11. 13; 11. 14.  
『이코노믹 리뷰』, 2014. 4. 23.  
정승일(2014), 『보이지 않는 손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다』, 『프레시안』, 2014. 5. 23.  
『조선일보』, 2014. 4. 25; 10. 6; 10. 7.  
『주간경향』, 2014. 7. 15; 9. 16.  
『중앙일보』, 2014. 8. 13.

- 최장집(2014), 「세월호 사건을 통해 본 책임의 사회적 조건」, 『네이버 열린연단』, 2014. 6. 24.
- 『프레시안』, 2014. 7. 10.
- 『한겨레』, 2014. 10. 15; 11. 7.
- 『한겨레21』, 2014. 5. 9.
- 『한국경제』, 2014. 5. 9.
- 『한국보험신문』, 2014. 4. 27.
- 『한국일보』, 2014. 4. 20.
- 『CNB저널』, 2014. 4. 28.
- 『JTBC TV』, 2014. 6. 10.
- 『MBC TV』, 2014. 4. 26.
- 『TV리포트』, 2014. 4. 21.
- 『TV조선』, 2014. 7. 21.

AA (2014), [http://en.wikipedia.org/wiki/Twelve-step\\_program](http://en.wikipedia.org/wiki/Twelve-step_program), retrieved 2014. 10. 19.

### 【논 저】

센, 아마티아(2013), 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라파고스.

아리스토텔레스(2013), 천병희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숲출판사.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_\_\_\_\_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497-505.

Davis, Keith. (1960), “Can Business Afford to Ignore its Social Responsibiliti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3): 70-76.

Eells, R. and C. Walton. (1961),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Hirsch, Joachim. (1974), *Staatsapparat und Reproduktion des Kapitals*, Frankfurt am Main.

- Jessop, Bob.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Cambridge: Polity Press.
- Locke, John. (1690),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10th ed.), Project Gutenberg, retrieved 25 March 2012.
- Miliband, Ralph. (1969),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 Porter, M. E. & M. R. 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17.
- Rousseau, J.-J. (1762),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Trans. Donald A. Cress, 1987)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 Schaeff, A. W. and D. Fassel (1988). *The Addictive Organization*, N.Y.: Harper & Row.
- Stiglitz, Joseph E. et al. (1989),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Oxford: Basil Blackwell.
- Tilly, C. (1990), *Coers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 ~1990*, Oxford: Basil Blackwell Inc.

원고 접수일: 2015년 2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5년 4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일

ABSTRACT

---

Corporate and Governmental Social Irresponsibility  
-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Light of Addictive Organization Theory

Su Dol Kang\*

The Sewol ferry disaster of April 2014 in South Korea that took the lives of as many as 304 people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structural contradiction, in which the socioeconomic problems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for more than the last 50 years were compressively expressed, and not as just a simple traffic accident or conspiracy.

The present study systematically explain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involved in the caus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ex post facto response processes, from the viewpoint of addictive organization theory.

Consequent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for Korean corporations or the government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 *system shift* should be achieved eventually to clearly recognize the process of addiction in the organization process and to fundamentally heal corpor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instead of providing partial, temporary, superficial, and ad hoc prescriptions.

---

\*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